

운 영 위 원 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변 호	172
------------	-----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1일

발 의 자 : 김경이, 오중균, 소형준, 이용진,
권영애, 정해숙, 정윤주, 진선아,
고영옥, 정병기, 이호건, 김육영,
경수현, 정기혁

1. 제안이유

가.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성북구의회 의원의 출산 휴가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인 상황임.

나. 성북구의회 의원이 임신·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며 기존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이 체포, 구금 시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제1항 단서)
- 나. 임신 중인 의원의 청가 및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3항)
- 다.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의원의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3. 8. 21. ~ 2023. 8.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문서로 출석요구를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 ----- ----- ----- ----- ----- ----- ----- 다만, 의원이 체포·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신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

<신 설>

<신 설>

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
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
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
면 신청할 수 없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
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
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
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
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
에게 문서로 출석요구를 하되, 긴
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
다.